

제314회 임시회
2012. 9. 21.(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9. 21.(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2년 8월 31일
-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4일
- 라. 상정일자 : 2012년 9월 11일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가.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조)
 - (당초)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변경)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

-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마련(안 제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거”, “기타” 등을 “따라”, “그 밖에”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다음의 사항은 명확한 표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조 “도의”를 “충청북도의”로,
- 제3조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 제4조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조 제6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 제7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 제8조제2항의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수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수정안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11. 정지숙 의원

○ 수정이유

조문의 명확한 표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 수정 주요내용

- 제1조 “도의”를 “충청북도의”로 수정

- 제3조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수정

- 제4조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조 제6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각각 수정

- 제7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

- 제8조제2항의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수정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조문의 명확한 표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2. 주요내용

- 제1조 “도의”를 “충청북도의”로 수정
- 제3조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수정
- 제4조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조 제6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각각 수정
- 제7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
- 제8조제2항의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수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도의”를 “충청북도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조 제6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구성) 충청북도 환경보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p>제2조(기금구성)----- ----- ----- ----- ----- 1.(생략) 2.----- -----<u>따른</u>----- ----- 3.----- ----- ----- <u>따른</u>----- ----- 4.----- --<u>따른</u>----- -----</p>	<p>제2조(기금구성)----- ----- ----- ----- ----- 1~7. (개정안과 같음)</p>

<p>5.~6. (생략) 7. 기타 수입금</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p> <p>2.~5. (생략)</p> <p>6. 기타 도지사가 인정한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p>	<p>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 금고----- ----- ----- ----- ----- ----- 제7조에 따라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사용 등) ----- 각호의 ----- ----- -----</p> <p>1. ----- 제24조에 따른 ----- -----</p> <p>2.~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도지사가 ----- -----</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충청북도 금고----- ----- ----- ----- ----- 제7조에 따라 ----- -----</p> <p>②~③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사용 등) ----- 각 호의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5. (개정안과 같음)</p> <p>6. 그 밖에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p>
--	---	---

<p>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 ----- ----- ----- -----<u>충청북도</u> <u>환경정책위원회</u>----- -----</p>	<p>----- ----- ----- ----- -----<u>충청북</u> <u>도환경정책위원회</u>----- -----</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2. (생략)</p> <p>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1.~3.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p>	<p>제6조(회의) ① ----- ----- ----- ----- ----- ----- -----<u>1 이상</u>----- -----</p>	<p>제6조(회의)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② (생략)</p> <p>제7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p>	<p>제7조(수당 등의 지급) ----- ----- -----<u>별</u> <u>위에서</u> -----</p>

<p>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p>	<p>----- ----- ----- -----</p>	<p>----- ----- ----- -----</p>
<p>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 연도마다----- ----- ----- -----</p>	<p>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마다----- ----- ----- -----</p>	<p>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 -----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 -----</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 ----- 회계 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 -----</p>
<p><신 설></p>	<p>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 -----</p>	<p>제10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2호, 3호, 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 7호 “기타”를 “그 밖의”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중 “매 회계 연도 마다”를 “회계 연도 마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25조에 따라----- ----- ----- ----- -----</p>
<p>제2조(기금구성)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p> <p>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p> <p>4.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p> <p>5.~6.(생략)</p> <p>7. 기타 수입금</p>	<p>제2조(기금구성)----- ----- ----- 1.(생략) 2.-----따른----- ----- 3.----- -----따른----- ----- 4.-----따른----- ----- 5.~6.(생략) 7. 그 밖의-----</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 ----- 제7조에 따라 -----</p>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2. ~ 5. (생략)
6.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사용 등) -----

-----.

1. ----- 제 24조에 따른 -----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6조(회의)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생략)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 연도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

회계 연도마다-----
-----.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시행에

-----.

관련법령 발췌

□ 환경정책기본법('90. 8. 1제정)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05. 8. 4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05. 12. 28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